

정 관

제정	2005. 11. 21. 정관 제1호
전문개정	2009. 08. 14. 정관 제2호
개정	2010. 08. 24. 정관 제3호
개정	2010. 12. 06. 정관 제4호
개정	2013. 01. 11. 정관 제5호
개정	2014. 04. 14. 정관 제6호
개정	2015. 04. 23. 정관 제7호
개정	2017. 04. 28. 정관 제8호
개정	2018. 01. 04. 정관 제9호
개정	2020. 08. 24. 정관 제10호
개정	2021. 07. 14. 정관 제11호
개정	2023. 09. 04. 정관 제12호
개정	2025. 03. 19. 정관 제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은 Korea Manhwa Contents Agency(약칭을 “KOMACON”이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만화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산을 통해 만화의 예술적, 교육적,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여 한국만화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개정 2015. 04. 2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04. 14.>

제4조(광고방법) 진흥원이 공고할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천시보 또는 경기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만화박물관·만화비즈니스센터] 운영 <개정 2014. 04. 14., 2017. 04. 28.>

2.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3. 웹툰융합센터 운영 <신설 2023. 09. 04.>
 4.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 운영
 5.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6. 만화문화의 해외 교류 및 수출 지원사업
 7. 만화작가 및 만화산업 관련 업체의 유치·육성
 8. 만화산업 및 만화상품 관련 기획·창작·제작·유통 지원사업
 9. 만화 및 만화산업 분야 전문투자조합 결성 운영
 10. 만화문화의 저변 확산 및 만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11. 만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수익사업
 12. 영화상영관 운영
 13. 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 2017. 04. 28.>
 14. 만화 문화 및 산업·정책·학술 연구 <신설 2017. 04. 28.>
 15. 비즈니스센터 및 만화박물관 시설임대 사업 <신설 2018. 01. 04.>
 16. 그 밖의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8. 01. 04.>
- [전문개정 2010. 12. 06.]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원 장 : 1명
 3. 노동자이사 : 1명<신설 2020. 08. 24.>
 4. 이 사 : 19명 이내(이사장·원장·노동자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0. 08. 24.>
 5. 감 사 : 2명 [제4호에서 이동 2020. 08. 24.]
-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4.>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5. 04. 23.>
2. <삭제 2015. 04. 23.>
3. 부천시 업무담당 국·소·단장 <개정 2015. 04. 23.>
4. <삭제 2010. 08. 24.>

5. <삭제 2010. 08. 24.>

6. <삭제 2015. 04. 23.>

7. 경기도 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10. 12. 06.>, <개정 2015. 04. 23.>

8. 원장 <신설 2015. 04. 23.>

②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간소화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06., 2013. 01. 11., 2015. 04. 23., 2020. 08. 24.>

③ <삭제 2015. 04. 23.>

④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04. 23.>

⑤ 감사 2명 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1명은 부천시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⑥ 선임직 임원 및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04. 23.>

제9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23., 2018. 01. 04.>

② 선임직 임원 및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04. 23.>

③ 선임직 임원(이사장·원장·감사를 포함한다)은 임기만료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충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이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23., 2021. 07. 14.>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8. 01. 04.>

⑤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원장 또는 당해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진흥원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곤란하게 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7. 14.>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다만, 퇴임전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이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친족 관계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 04. 23.]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소집과 의장권을 가지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03. 19.>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진흥원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19.>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관련 기업·단체·기관과의 공동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7. 04. 28.>

제17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진흥원과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회의록) 이사회 의사 진행 및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명과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임원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 <삭제 2025. 03. 19.>

제22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진흥원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진흥원의 기구

제23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두며,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별표)
2. 설립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금과 그 밖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투자조합 출연금을 포함한다)·기금운용 수익금·사업수입금과 잡수입 등으로 하며,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대여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목록을 작성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 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 모집·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04. 23.]

제28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의한다.

제29조(재산의 대여금지)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진흥원의 임원이 대표 또는 관리자로 있는 회사 및 법인과 임원 본인
2. 진흥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3. 그 밖에 재산의 대여나 사용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0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1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 제출시 시장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07. 14.]

제34조(경영공시) 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장래의 과도한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5. 04. 23.]

제35조(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보수제한) 진흥원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경영실적평가) 진흥원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04. 23.]

[전문개정 2015. 04. 23.]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에 귀속한다.

제41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지도감독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규에 따른다.

제4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2006. 04. 14. 정관 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의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 ① 재단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부 칙 (2009. 08. 14. 정관 제2호)

제1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이 정관 개정 이전의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모든 규정 및 규칙 중 명칭 “부천만화정보센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상임이사”는 “원장”으로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8. 24. 정관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6. 정관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1. 11. 정관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14. 정관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4. 23. 정관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관련 조항 적용례) 제8조 제1항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04. 28. 정관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1. 04. 정관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적용례) 제9조 제1항의 임원의 연임 조항은 2017년 7월 13일 구성된 제5기 이사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8. 24. 정관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14. 정관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9. 04. 정관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19. 정관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권자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공포한 후 3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설립당시 출연 재산목록

(단위 : 원)

구 분	재산내역	평 가 액	비 고
기본재산	출연금(기금)	10,000,000	